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란 어떤 것인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형상」이라 함은 선이나 면으로 표현되는 외형적 형태로서 연필의 육각형, 자동차의 유선형 등이 형상에 관한 예라 할 수 있으며, 「구조」라 함은 공간적, 입체적으로 조립·구성된 것으로 외관만이 아니라 내부적 및 단면적인 구성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각종 기계장치, 건축용의 적층판재 등이 이에 속하는 고안이라 할 수 있고, 「조합」이란 2이상의 독립된 물품을 상호기능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물품을 구성함으로써 각기 독립된 물품이 갖는 기능상의 효용가치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지우개가 달린 연필, 손톱갈이를 갖는 손톱깎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위 조건을 만족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및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국내 공지고안의 외국출원

우리나라에서 출원된 실용신안이 출원공고되었다. 이 고안을 일본에 출원하여도 등록받을 수 있나?

우리나라에 출원한 실용신안이 출원공고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1년내에는 일본에 출원과 동시에 우선권을 주장하고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본 특

허청장관에게 제출하면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짜에 일본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아 일본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출원한 후 1년이 지난 후 일본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일본에 출원한 날이 최초의 출원일이 되기 때문에 동일인에 의한 동일고안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공고된 자기의 고안이 일본에 출원하기 전에 공지(공고공보)된 것이 되므로 신규성 상실로 인해 거절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실용신안이 공고가 되었다함은 우선 심사를 거친 것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1년이 넘어야 공고가 되므로 우리나라에서 공고된 고안을 일본에 출원하는 것은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



◇의장과 디자인(Design)

의장이란 무엇이며, 디자인(Design)과는 어떻게 구별되며 그 대상은 무엇인가?

의장법상의 의장이라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의장은 물품의 외관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각을 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모양·색채는 의장으로서 인정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의장법의 대상이 되는 의장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로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디자인(Design)이라는 용어는 의장으로도 번역되나 의장 이외에도 계획·설계 및 도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업디자인과 장식디자인 등은 의장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도시계획디자인과 건축디자인 등은 물품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의장중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은 어떠한 것인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이란 의장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등록요건이란 거래대상이 되는 물품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및 창작성을 지닌 의장을 말한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의장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다량생산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신규성」이란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아니하였고 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의장 및 그 의장들과 유사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창작성」이란 출원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과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을 말한다. 그러나 위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라도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의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국기, 국장 등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타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것.